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定 款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定 管

\*2006. 7. 29 개정

\*2014. 2. 17 개정

\*2021. 5. 06 부분개정

\*2021. 9. 12 부분개정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사)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 지회라 한다.

제 2 조 (소개지) 본 지회는 인천광역시에 근거를 두며 향후 광역시 산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부를 둔다. 단, 지부결성은 한국연극협회 지회, 지부 설치 규정에 준한다.

제 3 조 (목 적) 본 지회는 지역 문화예술의 일익을 담당하며 연극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연극의 우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극예술의 향상 및 보급
2. 연극인 및 연극 단체의 지도 육성
3. 경연대회 개최
4. 연극의 국내외 교류 및 연극상 시상, 각종 연극제 개최
5. 지역예술 단체와의 교류
6. 연극협회 및 회원의 자질 향상과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발간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 원) 본 지회의 회원은 정 단체의 정회원과 준단체의 준회원으로

로 하고 무소속의 개인회원(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자 격)** 본 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지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연극예술인 및 이들이 조직한 연극 공연자 단체로서 구성한다. 입회는 개인, 단체 모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1) 개인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당 지역에서 최근 만 2년 이상 4개 공연작품 이상 연극활동(입회신청일 기준)을 한 자에 한한다.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2. 준회원

1) 준회원은 가입극단 대표가 추천한 자로 정회원 자격에 미달한 자

2) 준회원은 가입 극단에서 2년 이상의 지속적으로 연극에 종사 할 경우 매년 단체 등록 시 정회원으로 가입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개인 및 단체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지회 운영에 참여할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의 및 의결

2. 선거 및 피선거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부담의 납부

**제 9 조 (회원의 자격유지)** 회원의 자격은 매년 정기 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활동 실적을 심사하여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을 가리며 제 8조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협회는 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안내 및 활동을 독려한다. 본 지회 정회원은 한국연극협회 정회원 심사를 거쳐 정회원으로 인정하며 정회원수에 의해 지회 대의원 수를 결정하게 된다.

**제 10 조 (신입 단체의 요건)** 본 지회에 가입코저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회원 연기자 5명 이상을 보유한 단체
2. 위의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단체
3. 신입 단체는 가입 전 2년간 연 2회 이상의 지속적인 공연 실적이 인정되면 가입 즉시 이사회에 인정에 의해 정단체의 자격을 갖는다. 단, 가입 전 실적이 없는 단체는 가입 후 2년간 준단체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가입 2년간 지속적인 공연 등의 실적을 갖추었을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정단체가 된다.

### 제 11 조 (가입절차)

1. 본 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개인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1) 입회원서(소정양식) 1부
  - 2) 이력서 1부
  - 3) 주민등록 등본 1부
  - 4) 입회비
  - 5) 공연 및 기타 참고 증빙 서류
  
2. 본 지회에 가입코저 하는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회에 신청해야 한다.
  - 1) 협회 가입신청서 1부
  - 2) 이력서(대표자) 1부
  - 3) 대표자 주민등록 등본 1부
  - 4) 극단 등록증 사본 1부
  - 5) 회원 명단 1부
  - 6) 회원 이력서(사진첨부) 1부
  - 7) 사무실 소재지 약도 1부
  - 8) 단체의 연회비 및 입회비
  - 9) 공연 및 기타 참고 증빙 자료

### 제 12 조 (회비의 책정)

1.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개인 및 단체는 신입 입회시 협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입 입회비는 개인 150,000원[2021.09.12. 부분개정] 단체 400,000원으로 정

한다.)

2. 회원은 일정액의 연회비를 제출하여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다
3. 연회비는 회원1인은 연 50,000원, 단체는 300,000원(기본 5명에서 10명까지. 10명 초과시 1인당 5만원씩 납부해야한다.)으로 하고, 회비는 정기총회 전인 2월 말 이전에 일시 납으로 한다. 단, 단체소속회원은 대표가 취합 납부한다.

**제 13 조 (회원의 탈퇴) 탈퇴회원발생시 지회장은 이를 협회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1. 단체가 본 지회에서 탈퇴할 경우는 단체의 대표가 소정양식의 탈퇴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하여 정단체 및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2. 회원이 본 지회에서 탈퇴코저 할 때에는 지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3. 단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3년간 공연 실적이 전무하고 회비의 납부 등 제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후 3개월 간격으로 공연 독려 및 의무를 이행하도록 1년간 안배한후 변화가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한다.
4. 회원의 경우 매년 정기 총회 1개월 전에 단체 및 개인회원으로부터 공연 실적에 관한 증빙 자료를 요구 받아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을 재심사 한 후 그 실적이 미비한 회원은 1년간 준회원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활동을 독려하고, 그 이후 1년 동안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단 제12조 3항 의 의무를 이행하고 재심사 기간 전에 신상에 대한 의뢰를 한 경우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 14 조 (징 계) 회원에게는 다음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의 사유**

- 1)제12조의 요건에 위배 되었을 때
- 2)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3) 본 지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명
- 2) 견책

- 3) 기한부 권리 정지
3. 2항에 관한 복권의 경우 최소 3년 경과 후, 소정의 서식에 의거 복권 및 재가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사회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 제 3 장 임 원

### 제 15 조 (임 원) 이사 15인 이내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2인
3. 이사 : 당연직이사, 선출이사는 10인 이내
4. 직능별 협회, 추천이사 5인 이내
5. 감사 2인
6. 운영자문위원 약간명
7. 고문 약간명

### 제 16 조 (선 출)

1. 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지회장과 직능별 이사는 지회장의 임명제로 하고 가입 정 단체(극단)의 대표는 당연직이사의 자격을 가지며 부지회장과 직능별 추천 이사는 지회장의 임명제로 하고, 총회에서는 선출이사를 선출하여 이사 자격을 부여한다.
2. 임원의 자격은 모든 정회원에게 있으며, 지회장은 협회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며 선출이사는 총회에서 호선으로 입후보한다.
3. 임원의 선거는 대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4. 입후보자의 득표가 동수일 경우 에는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5. 2차 재투표에도 득표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6. 당선된 임원은 즉시 예총 및 예총 산하 단체와 시문화예술과에 제보하여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신임회장은 전임회장으로부터 업무 전반 및 회계 전반을 인계받아 협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17 조 (임 기) 지회장의 임기**는 4년[2019.02.25. 본부개정]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2022년부터 시행한다.)[2019.02.25. 본부개정]

**제 18 조 (지회장)**

1.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부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대신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한다.

**제 19 조 (이 사)**

1. 이사는 이사회에의 결의에 따라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의 의결 또는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협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이사는 협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감 사)**

1.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호선과 재청으로 2인을 임용한다.
2. 감사는 본 지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이사를 경직할 수 없다.

**제 21 조 (고 문)** 고문은 본지회의 육성에 열의가 있는 저명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본 지회의 자문에 응하며 역대 지회장은 본인의 의사를 물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2 조 (구 성)** 총회는 본 지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지회 산하 각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23 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24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입회금 및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출
7. 기타 본 지회에 관한 중요 사항

## 제 25 조 (정족수) 대의원 구성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 감사.

1.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임원선출 대의원 구성 :
  - 정단체(극단) - 기본 5명에서 10명까지는 대의원3명으로 하고, 회원 5명 추가시마다 대의원 1명 추가된다.
  - 무소속회원 - 협회 무소속 정회원으로 정단체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무소속 회원으로써, 10명에 대의원 3명으로 하고, 5명에 한 명씩 추가된다.
3. 전 항의 출석 및 의결권은 총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 제 26 조 (구 성) 이사회는 임원 중 지회장 부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 27 조 (소 집)** 이사회는 2개월에 한 번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28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각 분과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5. 정관 변경(이사회, 부분수정만 가능) 및 정관 변경 안(총회)
6. 예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회원 징계 및 표창의 심의에 관한 사항
8. 단체 및 회원 입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본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9 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의 안건 표결의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전 항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 연이어 3회 불참시 이사직에서 해임 된다.

##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 30 조 (구 성)** 본 지회 내에 이사회 의 심사 및 의결에 의하여 각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는 회원 10인 이상인 경우에 구성할 수 있다

**제 31 조 (소 집)** 각 분과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32 조 (부의사항)** 분과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이사회 의 건의사항
3. 기타 각 분 과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신입회원의 추천 단,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자체 사업은 실시하되 지회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한다.

## **제 7 장 제 정**

**제 33 조 (재 산)**

1. 본 지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2. 기본 재산은 연회 그 목록을 작성 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
3. 기본재산은 임대처분 기타 사설권을 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4 조 (세입 등)** 본 지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임원진 의무금 : 임원은 각 임원 취임 시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협회장 : 200만원
  - 부회장 : 50만원
  - 이사(선출 및 직능) : 10만원
4. 찬조금(발전기금)
5. 사업수입금
6. 기타 잡수입금
  - 1) 각 극단 연극제 참가 시 10% 발전기금
  - 2) 신규 단체의 가입비
  - 3) 신규 회원의 입회비
  - 4) 기타 잡수입금

**제 35 조 (회계연도)** 협회회계 연도기준

**제 36 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지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 37 조 (사무국등)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인을 둘 수 있다.

- 1)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지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3)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지회장이 채용한다.
-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 8 장 보 칙

제 38 조 (정관변경)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지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회원이 자격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정관과 본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부 칙 ◆

제 1 조 (정관의 효력) 본 지회 정관의 효력은 정관 수정이 있었던 총회 및 이사회 통과 당일부터이며 수정이 없을 때에는 그 효력이 계속된다.

제 2 조 (대한민국연극제 예선)

1.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자격은 지회에 입회한 정단체로서 3년이내에 정기공연 실적이 있는 단체라야 한다. (3년이내 정기공연 실적이 없는 단체가 예선전에 나올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대한민국연극제 예선대회  
대한민국 연극제 예선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극단은 대표자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 방법에 대한 의견을 토의 결정하여 운영한다.
3. 결선에 나가게 된 단체는 협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3 조 (회비 면제)**

1. 회비 면제는 정단체 회원으로, 만 70세[2021.09.12. 부분개정]가 된 회원에 한한다.

**제 4 조 (사무국)**

1. 협회사무국은 지회장이 바뀌어도 직원(국장 및 간사)의 변동 없이 협회 사업을 차질없이 계속 이어나간다. (단, 사무국 직원(국장 및 간사) 교체를 원할 경우,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교체할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국장 및 간사)은 새로운 직원이 오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주어야 한다.

**제 5 조 (발기인)**

1. 이사회 및 총회 결과보고서에는 발기인을 명시 해야 하며,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6일 부분개정

★이 정관은 개정이 없을 시 계속 유지된다.★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년 9월 12일 부분개정

★이 정관은 개정이 없을 시 계속 유지된다.★

